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4
----------	-----

2023. 4. 28.(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3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2023년 4월 20일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 가. 제안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가. 조례 제정이유

-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생률이 0.78로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소멸위기의 지방과 도심 공동화 현상,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학생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학교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개선’ 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이 같은 사회변화 추세와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을 발표(참고자료 1)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참고자료 1】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2023. 3.17.)

##### 주요 내용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
  - 늘봄학교 '23년 시범운영 학교 등 우선 선정
-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및 아동친화시설 조성 등
-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방안 마련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지원
  - 사업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자료: 교육부 교육자치안전국 교육시설과(2023.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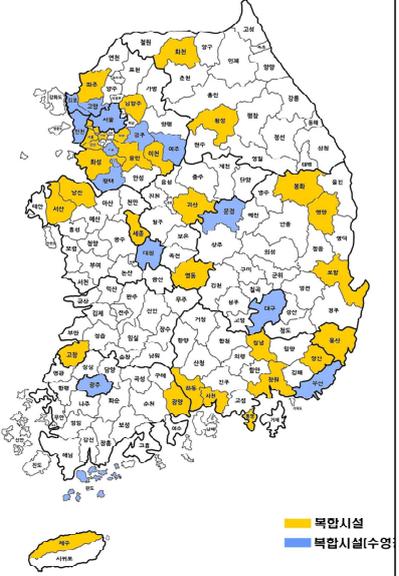
- 현재 17개 시도 기초지자체에서 총 87개의 학교복합시설이 활발하게 운영 또는 추진 중에 있음(참고자료 2)
- 충청북도는 2020년부터 송면중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임.

○ 그러나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229개 모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공모·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학교 복합시설 정책은 더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우리 충청도 학교 복합시설을 요청하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2】

[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서울	25	24 (15)	1	강원	18	2	16
부산	16	12 (3)	4	충북	11	2	9
대구	8	2 (1)	6	충남	15	2	13
인천	10	3 (1)	7	전북	14	1	13
광주	5	2	3	전남	22	2 (1)	20
대전	5	2 (1)	3	경북	23	4 (1)	19
울산	5	2	3	경남	18	6	12
세종	1	1 (1)	0	제주	2	1	1
경기	31	19 (7)	12	<b>합계</b>	<b>229</b>	<b>87 (31)</b>	<b>142</b>



자료: 교육부 교육자치안전국 교육시설과(2023. 3. 17)

○ 따라서 충청북도 내 학교와 기초지자체별 특성 및 지역 요구를 반영한 충청북도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목적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2조는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및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에 대한 뜻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 학교와 설치되는 복합시설 및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중시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 운영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시행 및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여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조례 제정 시 집행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학교복합시설법」에서 규정한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 내 지역의 특수성 및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교육감과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체계적인 시행 체계를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으로 학생과 주민 이용 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 적용과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생의 학습활동 보장과 학교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0조에는 학교복합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교육과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관련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관련 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에 학교복합시설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복합시설 이용 방법 및 시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학교복합시설법」 제7조의 학교시설운영협의회에 관한 위임 규정(참고자료 3)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규정과 조례와의 체계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됨.

### 【참고자료 3】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다. 종합의견

- 현재 우리 사회가 인구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멸해 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정책 실현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물론, 많은 일반 학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시행 노력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북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후학교·초등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7. 구도심, 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959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 3. 23.>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 ·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시행일: 2023. 4. 19.] 제31조

## □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